

현장실습 협약서

실습기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하 "실습기관")과 대구대학교(이하 "학교") 작업치료학과, "을" 소속 학생들(이하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생의 전공분야 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수업(이하 "현장실습")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현장실습의 의의)

현장실습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실습기관의 현장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2조(협약기간 및 장소)

- ① 협약기간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2024년 02월 29일까지로 한다.
- ② 원칙적으로 실습시간은 최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당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야간(22:00부터 익일 6:00 사이)에는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없으나,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받아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 ④ 실습장소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원내와 실습과 관련된 부속 장소로 한다.

제3조(실습지원비)

- ① 실습기관은 실습의 내용에 따라 현장실습생에게 숙식비, 교통비, 실습보조금 등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실습지원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비용에 해당하며, 지급금액은 실습내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학교의 협의로 정한다.
- ③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지각·결근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의해 현장실습이 중단되는 경우 등 정해진 실습시간에 모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습 시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④ 단, 전문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제3조 ①~③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전문자격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학교는 실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아래와 같이 실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지원 내역: 실습지도비, 교재비 등
 - 지원 비용: 실습학생 1인당 주 25,000원
 - 지급 방식: 실습기관 은행계좌로 입금(신한은행 :100-028-883109,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이순형)

4 조(실습기관의 의무)

-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실습내용을 구성함으로써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②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학교의 의무)

- ① 학교는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일정을 수립하며, 현장실습생을 모집·선발한다.
- ② 학교는 선발된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아래 각 호의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1. 실습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는 협약서 내용을 현장실습생에게 안내하고 학교의 실습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실시한다.
- ④ 학교는 실습 전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및 구비하여 실습기관의 실습부서에 제출한다.
 1. 「위탁교육 실습생 면역 현황 확인서(실습기관 서식)」 및 「결과지 또는 예방접종 증빙서류」
 - 1)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풍진(여성만 해당), 수두, 백일해
 - . Ig G 검사결과가 양성(+)의 경우 : Ig G 양성 결과지 제출
 - . Ig G 검사결과가 음성(-)의 경우 :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증빙서류 제출
 - 2) 인플루엔자 : 12월~5월 기간의 실습생에 해당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증빙서류 제출
(단, 9월~3월 중에 실시한 예방접종에 한하여 인정)
 - 3) 결핵 : 최근 1개월 이내 촬영한 X-ray 결과지 제출
2. 「현장실습학생 서약서(실습기관 서식)」
3. 「현장실습학생 상해보험 가입서 사본」

제6조(현장실습생의 의무)

- ① 현장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제5조 제2항의 사전교육 내용 및 실습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② 현장실습생은 실습기관이 요구하는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현장실습에 참여한다.

제7조(현장실습의 중단)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실습기관이나 학교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현장실습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현장실습생의 실습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기관은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학교에 통보한다.

제8조(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게 보건·위생이 보장되고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실습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실습기관은 실습기관의 필요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학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실습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9조(의료사고 등)

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실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비밀유지)

학교와 실습기관은 상대방으로부터 입수 또는 인지하였거나, 본 협약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 자료 등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본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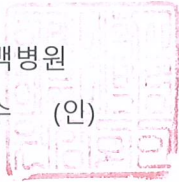
제11조(적용규정)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전문자격 관련 법령 또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17-115호, 개정 시 개정된 고시에 따른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3년 01월 26일

실습기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대표자 원장 김 동 수 (인)



학교

대구대학교
대표자 총장 박 순 진 (인)

